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¹⁾

노 혜 련*

- I. 서 론
- II. 연구목적
- III. 연구배경
- IV.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 V. 본 론
- VI. 결 론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for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for the 1990s)³⁾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할 의무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주한 유니세프 대표부도 이러한 역할수행의 일환으로 동 협약과 선언 및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에 필요한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와의 면담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내에서의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되었다.

I. 서 론

국제연합 아동기금은 아동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대표적 국제기관으로서 각 회원국내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²⁾과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선언 및 행동계획」(The World Summit

II. 연구목적

국제연합 아동기금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2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한국정부가 아동권리 국제협약 비준후 2년이 되는 1993년 12월 20일까지 국제연합아동권리위원회에 동 협

1) 이 논문은 국제연합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2) 이하 아동권리 국제협약으로 약칭함.

3) 이하 세계정상 행동계획으로 약칭함.

* 숭실대학교 교수

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녔음을 감안하여 동 협약과 세계정상 행동계획이 중요시하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한국내 민간단체의 동 협약 및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가 정부의 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였다.

둘째는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회원국에게 동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를 실행할 책임뿐 아니라 협약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국제연합 아동기금은 본프로젝트를 통해 민간단체들이 동 협약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협약이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국제연합 아동기금의 연구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기준에 입각해 한국 아동을 위한 제반분야에서의 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III. 연구배경 :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선언 및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의 배경

1. 아동권리 국제협약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으로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전문과 54조로 되어있는 동협약은 인권의 일부로 간주되는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그리고 문화권을 아동을 위한 이 조약속에 포함시켰고 이 조약으로 인해 회원국들은 아동권리의

보장을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서 이행할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기존의 각국 법률이 보통 아동을 단순히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라는 성인의 시각을 반영시키고 있으나 동협약은 아동을 독립적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이익이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협약은 아동의 권리충족을 위한 실천적 의무뿐 아니라 협약에 제시된 원리와 조항들에 대해 성인과 아동을 포함하는 회원국 성원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협약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함께 아동 권리를 강화시키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협약은 또한 그 조항에 명시된 각종 아동권리 보장 의무의 준수와 실천을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에는 비준 후 2년내에, 그 이후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제연합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회원국은 현존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 국제협약을 비준하였고 1991년 12월 20일 회원국이 되었다(동아일보, 1990 : 21; UNICEF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1992 : 35-37).

2.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선언 및 행동계획

1990년 9월 30일, 국제연합은 국제연합 아동기금 주관하에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71명의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총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던 동 정상회담에서는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선언과 행동계획」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국제연합회원국들은 각기 자국 아동들을 위한 1990년대 행동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f Action)을 작성하여 시행할 것을, 그리고 국제연합 아동기금을 비롯한 관련 국제연합기구들은 이를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동 선언과 행동계획은 세계의 수 많은 아동들이 그들의 발달을 저해하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배고픔, 무주택, 전염병, 문맹, 환경의 파괴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에 유념하고, 매일 4만 여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 질병, 식수와 위생시설의 결핍, 약물남용 등의 희생자로 죽어가고 있음을 문제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동 선언 및 행동계획은 또한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고유의 존엄성과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아동이 사랑과 이해속에서 성장하고, 자유, 평등 등의 사회이상의 테두리안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그들의 못권리는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재천명하였다. 아울러 무의무탁한 아동들, 전쟁, 방사능, 유독 화학물질 등 인재에 희생된 아동들, 성적학대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로 유린당하고 착취당하는 아동들, 장애아, 우범소년, 인종차별 정책에 희생되는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부당한 노동 및 마약

문제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는 동 선언 및 행동계획에 1991년 6월에 서명하였고 이 행동계획의 요청에 호응하여 1992년 2월 〈한국 아동복지 10개년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한국 어린이를 위한 1990년대 행동 프로그램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시행 중에 있다(박보희, 1992: 5-6).

IV. 연구방법 및 분석대상

본 보고서는 관련자 면담(1993년 7월 13일-1993년 8월 12일)과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국제연합 아동기금과 아동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세계정상 행동계획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는 5개 부문(교육, 문화, 보건, 환경 및 사회복지)의 민간단체 대표 및 실무자 15명을 선정하여 면접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면접은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한국내 해당 분야에서의 동 협약 및 계획의 이행현황, 문제점, 제안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논문은 사회복지 부문에서 다른 7개 분야중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입양, 아동학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주제에 국한하고자 한다.

V. 본 론

1. 입양서비스

입양서비스에 대해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21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1조 : 입양제도의 합법성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1.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서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기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국제입양은 아동의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장치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입양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조하고, 주로 국제입양에 대한 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정상 행동계획은 제19조에서 아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할 때는 다른 가정에 맡김으로써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들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나 또는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나 다른 가정에 맡김으로써 어린이들이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친척이나 친지, 지역사회 단체들이 앞장서서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줘야 할 것이다. 단 한명의 어린이도 사회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조항에 입각하여 한국입양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현 황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한국의 입양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근의 국내외 입양아동 현황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급격한 감소가 없는 한 3,000명 정도에 이르렀고 이 중 국외입양이 2,000명 정도를 점유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김현용, 1993 : 47).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의 비율은 1975년에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의 2.8배, 1987년에는 3.33배 이던 것이 차차 감소하여 1990년에는 1.79배가 되었다(박균성, 1993 : 52). 정부는 앞으로 국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며,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양부모 자격 기준완화 등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사회보장부문제기획위원회, 1991: 99).

현재 아동의 국내 입양사업은 4개의 입양기관과 시·도별 28개의 국내입양 지정기관 및 시·군·구의 아동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1992년 1월부터는 고졸이상으로 규정되었던 학력을 삭제하고 연령을 45세 이하에서 5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보건사회부, 1991: 83). 전체 입양의뢰 아동의 약 50%가 미혼모가 낳은 아동이며 가정빈곤, 일시동거, 부모사망, 부모이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갑수, 1992: 155).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는 주로 국외입양에 대한 규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국외입양을 중국에는 중단되어야만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국아동의 국외입양은 그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입양과 관련하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주과제는 국내입양이기에 본 보고서는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내입양법의 개선방안

한국의 국내입양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민법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은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이익보다는 부모의 이익이 보다 많이 고려

된 제도라고 볼 수 있기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박균성, 1993: 52).

가) 아동권리 국제협약 제 21조 1항은 “아동의 입양이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또한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순히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해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사정하고 교육한 후 허가하는 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박균성, 1993: 52).

입양알선기관외의 기관 및 개인이 비합법적으로 아동을 국내가정에 입양시킨 경우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제 18조(금지행위) 제 6호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34조(벌칙) 제 4호는 위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19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입양특례법개정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일한 위배행위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불법입양 알선행위의 처벌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 처벌이 규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면허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박인선, 1995).

나)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제 12조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낮추어져야 하고 아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라도 3세이상의 아동은 최소한 입양되기 전 입양될 가정에서의 적응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의사도 물어져야 할 것이다(박균성, 1993 : 52; 박인선, 1995).

또한 민법은 이성양자의 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의 변경에 있어서도 양자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박균성, 1993 : 52).

다)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제 7조 1항은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신분 및 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그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혈연중심의 가족을 중시하고 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이 입양의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 이상이 친자로 신고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비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양부모는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입양아동은 자신의 생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기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 입양아

동을 양부모의 호적에 친자로 입적하고, 입양전의 호적은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이중 호적제를 도입하여야 하겠다(박인선, 1995).

라)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제 21조의 서두에서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하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파양선고를 내리면 양부모는 더 이상의 부양책임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제도는 양부모가 아동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쉽게, 인위적으로 자녀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양부모의 입장만 참작되고 아동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동의 파양은 20세가 되기 전에는 불허하여 가능한한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이지숙, 1993).

이에 덧붙여 현재 입양되고 있는 아동의 99% 이상이 친자로 입적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양부모가 아동을 더 이상 양육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자녀관계를 단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인선, 1995).

(2)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가) 정부는 최근 1996년에 국외입양을 중단한다는 시책을 반복해야만 하였다. 국내입양 촉진사업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는 국내의 여건을 1996년까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기에 국외입양의 문제는 다시금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중매체의 활용을 통한 대대적인 국민의식 계몽교육일 것이다. 이때 명시해야 할 점은 국민의식의 변화는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투자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내 국내입양의 활성화는 아동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현재 한국 부모들이 안고 살아야 하는 아동양육의 과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 않고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박군성, 1993:52).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입양기관에 제공하는 국내 입양 활성화 지침에 “관내 무자녀 가정 또는 입양이 가능한 가정을 파악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홍보 및 권유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시책일 수 없고 국내입양아동수의 증가를 위한 무리한 공여지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박인선, 1995).

나) 입양특례법 제5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입양특례법개정법률을 통해 입양가정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혜택과 양육비·의료비·교육비 등의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특혜를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입양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는 입양신고로 증명되었을 때만 고려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친자 입적을 하는 한국의 입양현실에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위해 입양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이지숙, 1993). 아울러 한국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1992년 1월부터는 고

졸이상으로 규정되었던 학력을 삭제하고 연령을 45세 이하에서 5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격없는 사람에게라도 입양을 시켜 국내입양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시도로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3) 국외입양조건외 개선방안

국외입양은 머지 않은 장래에 중단되어야 하겠으나 중단되는 날까지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국외로 입양되어가는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정부가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아동의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외국기관들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다. 한국아동의 입양을 담당할 외국기관은 양부모를 정밀하고도 신중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양부모에게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지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전준비는 양부모가 한국입양아동을 양육할 때 접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할 능력을 키워주는 워크숍과 교육 등을 포함하고 사후지도는 아동의 적응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문화행사, 건전한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들로 하여금 한국어에 능통하고 입양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회사업가를 적어도 한명은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박인선, 1995).

2. 학대아동 보호서비스

학대를 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아동

권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9조 : 각종 폭행과 방임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절차확립의 필요성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39조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여하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예방과 사실의 발견 및 사법적 개입,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치료조치까지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아

동학대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학대의 부분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규정하고 있다.

제 34조 : 성적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여하한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세계정상 행동계획은 제 22조에 특별히 역경에 처한 아동들중 성적 학대 등에 시달리며 착취당하는 아동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아, 집없는 아이들, 피난민, 전쟁이나 방사능 또는 유독한 화학물질 노출과 같은 인재에 의해 희생된 어린이들, 매춘이나 성적 학대 등에 시달리며 착취당하는 어린이들, 장애자, 십대 문제아들, 인종차별정책이나 외국에 의한 점령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그들이다.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아동학대 조항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아동학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1) 현 황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유기라고 볼 수 있다. 기·미아의 발생율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기아의 발생율은 198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미아의 발생율의 2-3배나 되어, 기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김현용. 1993 : 48). 가정문제 등으로 유기된 아동은 100% 국가가 수용하므로 한국의 학대아동보호서비스는 기·미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배근. 1993b).

아동학대에 관련된 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미성년자 보호법, 근로기준법, 형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의거한 법적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 아동학대의 정의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조사 등을 통해 추정된 한국 아동학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신영화. 1986; 성민선의. 1991; 홍강의. 1992). 안동현과 홍강의(1987)의 한국의 아동 구타현황연구에 의하면 심한 손상을 입은 67명의 아동 가운데 구개골을 포함한 신체부위의 골절이 16사례, 복강과 뇌출혈이 8사례, 사망이 6사례나 되었다. 또한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성폭행 418건 중 29%인 123건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홍강의. 1992).

한국에서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전개되어 온 노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배근. 1993a : 25-26).

(1)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동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 1년만에 폐지되었다.

(2) 1983년 한국어린이보호회는 어린이 상담전화선을 개설, 아동의 고민에 대한 상담과 매 맞는 아동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으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1985년 7월 서울시립아동상담소가 '아동권익 보호신고소'를 개설, 전담직원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처리하여 공립기간으로서는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을 시도하였으나, 홍보의 미흡 등으로 5년간 실적이 96건에 그쳤다.

(4) 1988년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ISPCAN: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의 부회장 Jaap E. Doek박사가 국제연합아동기금의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지역세미나를 5개 대도시에서 개최하면서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5) 위의 노력의 결과로 1989년 3월 한국어린이재단은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보건사회부의 후원으로 민간단체인 '한국아동예방협회'를 설립, 서울에 협회사무국을 두고 한국어린이재단 전국 20개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역신고센터'를 개설, 9개 지역협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 협회는 전화, 서신 및 직접 내방을 통하여 서울대 소아병원 및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239건이었고 이중 신체적 학대가 120건으로 50%를 차지하였다.

(6)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1990년 9월 교육폭력 추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호루라기 상담전화선을 개설하였다. 1990년에서 1992년 2년에

결친 상담수는 44건이었고 상담내용은 상습적인 체벌, 모욕적인 언사, 과도한 체벌 등을 포함하였다. 체벌을 위해 교사들이 사용한 도구로는 당구채, 아이스하키채, 알루미늄 야구배트 등이었고, 체벌의 방법은 양손으로 뺨을 때린다거나 종아리, 발바닥 또는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것 등이 보고되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는 연구자들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한 아동학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사랑의 메”로 인식되는 한국상황에서는 혼육과 신체적 학대의 혼돈이 계속되는 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여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배근, 1993a:45-53).

(2)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제 19조 1항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제정,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법적보호는 매우 미약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 18조 제 9호가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유일한 법적규정이라 할 수 있으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라고 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법 제 34조 제 3호는 학대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제도 매우 미약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보고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체계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가 있어야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현재의 아동복지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에 별도의 아동학대예방법이 필요하다(이배근, 1993b).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제 19조에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이 동법 “제 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하는 등의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가정에 들어가 아동을 아동학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 하면 “가택침입죄”, 데리고 나오면 “아동유괴죄”를 범하게 되는 실정이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의 경우 직계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이배근, 1993b).

학교체벌에 관해서는 교육법 제 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체벌을 한 교사의 형사적 책임문제와 폭행교사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등 6건의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의 판례 「대법 78조 203, 1978년 3월 14일자 판결」뿐이었고, 체육교사가 반공훈련에 불참한 학생을 구타하여 두개골 골절로 학생이 죽은 경우에도 폭행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1978년 6월 23일자 판결」(안경환, 1990 : 36-37).

(3) 제도적 개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학대아를 발견, 치료,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아동권리 국제협약 제 19조 제 2항은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제도화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개입이 불가능하기에 신고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거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운영되고 있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와 같은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신고제도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CDB위원회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개업의사, 행정업무 담당관, 전문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되어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필요하다고 판정된 사례에 대한 타기관 의뢰, 체계적인 사후지도 등을 실시한다.

유럽에서와 같이 CDB와 같은 정부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를 통해 아동학대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학대 전담 정부기관이 설치되어 아동학대의 신고부터 치료와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직접 서비스와 조정, 의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4) 학대받은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아동권리 국제협약은 제 39조에서 학대를 받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학대예방협회로 신고가 들어오면 심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일시보호시설(서울시 아동상담소, 소년의 집 등 전국적으로 시·도마다 1개 이상 있음)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협회나 대학병원이 감정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으나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치료기관 등이 설립되고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정위탁 보호사업이 개발·활성화되어야 한다(이배근, 1993b).

(5) 국민적 인식의 제고와 연결망의 구축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인식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기에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켜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등의 지역사회 연결망을 구축하여 상담·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제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 소년소녀 가장세대

한국에서 요보호아동이라 하면 생활보호사업의 제1차적 대상이 되는 거택보호 대상자로 이 중에서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수용아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서비스만 다루기로 하겠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조 : 아동의 보호/양육 및 그 기관의 감독

1.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의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내용은 사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서비스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사실상 아동권리 국제협약에서는 소년소녀가 세

대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동 협약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지되고 보완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1) 현 황

한국의 소년소녀가장세대 사업은 정부가 1985년 “선가정, 후시설보호”라는 정책하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선정대상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는 세대이다(체육청소년부, 1992:298; 이배근, 1993b).

정부는 이들 세대를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책정하여 주·부식비, 연료비,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 또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국민학생을 포함한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중·고교생 전원에 대한 피복비 및 영양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체육청소년부, 1992 : 299).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을 위한 결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재단에 결연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2년말 현재,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결연율은 세대단위로 98.6%(세대원의 86%)이고, 실질적 후원금은 결연아동 1인당 월 평균 25,000원 정도이다(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1994).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으로서 성립 불가능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가정, 후시설보호” 정책은 그 취지는 훌륭하나 그 시행방법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 듯 하다. 가장이란 집안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진자를 의미함으로(한국여성개발원, 1984:93) 소년소녀가장 진정한 의미에서 한 세대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배근, 1993). 따라서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볼 때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성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은 보호·양육되는 기본적인 가족의 형태로 간주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병리적이고 용인되어서는 안될 가족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소년소녀가장세대의 2/3 이상이 친척이 있으므로(이배근, 1993b)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 법정 후견인이나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성인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동시에 가정위탁제도 등의 도입으로 이들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보호·양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겠다.

2) 가정위탁보호를 포함한 가정복지의 필요성
지역사회나 가정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을 잃었을 때는 아동은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적절한 도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정위탁 보호와 아울러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지들이 빈곤을 이유로 부양책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인 보조를 포함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읍, 면, 동 단위의 소(小) 지역별로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소를 설치하여 해체 가정으로서의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가정방문, 가정지도, 자립계

획수립 등 각종 전문적인 가정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들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의료적 제반 서비스 프로그램 측면에서 협의, 조정, 정책 결정의 기능을 갖는 지역사회 협의기구로서의 지역사회 가정복지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다(이배근, 1985 : 86-89).

VI. 결 론

아동 및 청소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한국이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요청에 호응하여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시행중에 있는 한국 어린이를 위한 1990년대 행동프로그램에는 보건, 환경, 식수, 영양, 복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한 많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아동복지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정부는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아동복지 기본시책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잘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책달성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프로그램의 실시가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입양, 아동학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사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양서비스

한국의 국내외 입양아동의 현황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정부는 최근에 국외입양을 점차 감축하여 1996년부터 전면 중단시킨다는 계획을 번복해야만 하였으나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계속 수립·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현

을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위탁제도도 입양의 차선택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한 현재 아동보다 부모의 이익이 많이 고려되는 입양제도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학대아동 보호 서비스

한국은 아직 아동학대의 정의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이지만 개인적 차원의 사회조사로 추정된 아동학대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유기로 기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법적보호는 매우 미약하여 이에 의거한 실제사례의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의 제정, 보완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신고를 제도화하여 피학대아의 발견, 치료,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3.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 :

소년소녀가장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조항은 없으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지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소년소녀가장세대사업은 1985년부터 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 한 세대의 가장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가족형태로 간주될 수 없음이 인식되어야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 법정후견인 등 성인의 보호를 받도록 하거나 가정위탁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여 이들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서 보호·양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겠다.

이미 서론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은 아동권리 국제협약과 세계정상 및 행동계획의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의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의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권리 국제협약이 지향하는 이념과 조항의 내용은 한국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은 기존의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황을 재조명해 보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한국의 입양서비스는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 아동학대의 경우도 피학대 아동을 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그 개념조차 성립이 안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한국정부가 국제법의 효력을 지닌 아동권리 국제협약의 가입국으로서 규정된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고 한국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앞으로의 아동복지 정책수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현용. 1993,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개선방향」, '93 한국아동복지학회 제3회 학술대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 제2차 분석 발표회, 한국아동복지학회, pp.43-70.
- 동아일보. 1990. 「어린이 보호정책 새 전기」, 10월 11일, 21면.
- 박보희. 1992.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한국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참고 자료집, 국제연합 아동기금 한국대표부, pp. 5-6.
- 박보희·김선심. 1991,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선언및 행동계획 UNICEF 한국후속사업 자문회의 보고서」, 국제연합 아동기금 한국대표부.
- 박군성. 1993. 「아동복지제도와 아동의 현실」, 제2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자료집,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 & 국제연합 아동기금 한국대표부, pp.39-58.
- 박인선. 1995. 대한사회복지회 아동복지부 부장, 개인면담.
- 배태순. 1993. 「국내입양문제와 관련한 입양개정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pp.1-22.
- 보건사회부. 1991. 「아동복지국고 사업수행지침」.
- 보건사회부. 1994.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 사회보장부문제기획위원회. 199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사회보장부문제획안」.
- 성민선·홍강의·박정환. 1991. 「아동학대」,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선언 및 행동계획 UNICEF 한국후속사업 자문회의 보고서, (박보희 & 김선심 편), 국제연합 아동기금 한국대표부, pp. 103-109.
- 신영화. 1986. 「한국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안경환. 1990. 「체벌의 법적 문제, 교유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제3회 세미나 자료집,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pp. 36-37.
- 안동현·홍강의. 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 정신건강연구, 제62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pp.53-65.
- 이배근. 1985. 「소년소녀가장가정의 현황 및 대책방안」, 동광 통권 제82호, pp.73-92.
- _____. 1993a. 「한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_____. 1993b. 한국어린이재단 복지부장, 개인면담.
- 이지숙. 1993. 홀트아동복지회 국외협력부 부장, 개인면담.
- 체육청소년부. 1992. 「청소년백서」.
- 표갑수. 1992. 아동복지,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p. 155.
- 한국여성개발원. 1984. 「현대가정과 자녀교육」, 한국가족제도의 변화의 재조명, p. 93. 이배근, (1985), 「소년가장가정의 현황 및 대책방안」, 동광, 통권 제82호, p.73에서 재인용.

홍강의. 1992. 「한국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문제점의 도출과 대책을 위한 제언」, 제1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보고서, (박보희 & 김전심 편), 제1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국대회 조직위원회·국제연합 아동기금 한국

대표부, pp.165-179.

UNICEF East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Office. 1992. Report of the 2nd Regional Consultation :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UNICEF, pp.35-37.

바른말

고운말

바른사회

고운사회